

## 중한 법령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교육을 위한 예비 연구\*

김혜림  
(울산대)

### 1. 서론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 번역 업계에서도 기계번역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6년 11월 성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신경망기계번역기(NMT: Neural Machine Translation)가 등장하면서 기계번역은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법률번역 분야에서도 기계번역을 활용한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2019년 국내 대학과 업체가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한·영 법률번역 전문서비스가 론칭되었으며(머니투데이, 2019. 12. 13), 국내 한 스타트업에서는 법률 기계번역 플랫폼을 개발해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21개국의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동아일보, 2019. 9. 25).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법률 번역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번역이 급증하는 법률번역 수

요를 해결하고 번역 비용을 절감하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기계번역 결과물을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개입하는 포스트 에디팅(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이하 ‘포스트에디팅’)이 필요하다. 기계번역 결과물은 허점이 있으므로, 상업적 용도, 출판, 대중 유포 등을 목적으로 하고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번역품질에 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개입하여 기계번역을 후처리하는 과정인 포스트에디팅이 필수적이다(Doherty 2016: 958). 언어 서비스업체(Language Service Providers, LSP)들은 이미 이 같은 변화에 맞추어 포스트에디팅이나 기계번역 평가, 개선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Zaretskaya 2017: 117), 국내에서도 점차 많은 LSP들이 포스트에디팅을 활용한 번역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김순미, 신호섭, 이준호 2019: 42). 현재 출시된 법률 기계번역 서비스 역시 법령 및 조례 등에 대한 AI 기계번역 결과를 전문 번역사가 수정하여 최종 번역문을 완성하는 포스트에디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한·영 법률번역 전문서비스를 출시한 (주)에버트란 이창호 대표는 “향후 기계번역의 품질 향상은 물론 기존의 전문 번역사 기반의 번역산업은 ‘포스트에디팅’ 서비스로 대체되면서 번역시장의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머니투데이, 2019. 12. 13).

하지만 이와 같이 법률 분야에서 기계번역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법률텍스트 기계번역과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번역학계 논의는 드물다. 학술연구 전문 데이터베이스인 RISS에서 ‘기계번역’을 검색어로 번역학 연구를 검색한 후 ‘법률’, ‘법령’, ‘특허’ 등 법률텍스트 관련 연구를 조사한 결과, 법률텍스트 기계번역을 다룬 국내 연구로는 특히 기계번역 결과 품질을 분석한 최효은과 이지은(2017),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를 소개하고 기계번역의 저작권법적 문제점을 제기한 이상모(2021) 두 편만 검색되었으며, 법률텍스트 포스트에디팅 연구는 전무했다.

한편 그간 포스트에디팅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포스트에디팅 품질, 수반되는 노력 등 실무 영역이었으며, 포스트에디팅 교육과정 수립, 교육사례 등 포스트에디팅 교육 관련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마승혜 2018; 이상빈 2017). 하지만 향후 포스트에디팅 물량이 증가하고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포스트에디팅 교육은 번역에 필수적인 영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순미 2017: 6). 국내 포스트에디팅 교육 연구를 보면, 영어-한국어, 일본어-한국어, 중국어-한국

\* 이 논문은 2021년 울산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어 언어 쌍 연구에서 자기소개서, 보고서, 기사, 칼럼, 연설문,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학부생 및 번역전공 석사생의 포스트에디팅 수업사례, 번역교육 경험의 포스트에디팅 품질에 대한 영향 등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의 문제점 또는 수업 소감 등이 보고되었다(김순미 2017; 김혜림 2020; 마승혜 2018; 박혜경 2018; 이상빈 2017; 서보현, 김순영 2020). 기계번역 품질이 언어 쌍, 텍스트 유형, 주제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할 때(Raido 2016), 다양한 언어 쌍, 텍스트 유형에서 포스트에디팅 교육 사례를 수집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률 텍스트 중 한국에서 공공번역(public-sector translation)<sup>1)</sup>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법령을 대상으로 학부생과 번역전공 석사생의 중국어-한국어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 포스트에디팅 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하는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법률텍스트 번역과 포스트에디팅 교육

### 2.1 법률텍스트 번역

법률텍스트는 ‘법률 언어(the language of the law)’로 구성된 텍스트를 말한다(Mellinkoff, 1963 :3). 법률 언어는 주로 법률 전문가들 간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특수목적 언어(special-purpose languages)로서, 일반 언어와 구별되는 어휘적, 구문적 특징을 가진다. 주로 영어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이기는 하나, 법률 언어의 특징에는 고어투, 격식성, 비밀상적이고 난해함, 전문용어, 명사화, 길고 복잡한 문장, 장황하고 중복적인 표현, 수동태의 과다한

1) 공공번역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국가 공공기관의 직, 간접적인 예산자원을 받아 이루어져 일반 대중에게 공개, 사용되는 번역을 의미한다(정호정 2013). 법령 번역은 대표적인 공공번역 분야로서 2018년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정보센터가 대한민국 법령 중문번역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국내 법률 번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용, 조동사의 빈번한 사용, 이중부정문, 비인칭 주어 특징 등이 거론된다(Mellinkoff 1963; Tiersma 1999). 한국어와 중국어 법률 언어의 경우 수동태 대신 주어 생략을 자주 사용하는 등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부 특징은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한국어 법률 언어의 특징으로 기형적 장문, 문장성분 간 호응의 불일치, 주어나 목적어 등 문장성분 생략, 필요한 조사생략, 난해하거나 어색한 표현과 한자어, 명사형 어미의 과다한 사용 등이 보고되었으며(장소원 2009), 중국어 법률 언어 연구에서도 주어 부재, 기형적 장문, 장황하고 중복적인 표현 등 특징이 제시되었다(劉會春 2006; 胡大偉 2005).

이러한 법률 언어의 특징은 스타일과 의미 해석 측면에서 번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해당 장르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역과 이에 맞는 적절한 어법 구사는 목표언어 독자의 수용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Colson 2008; Pontrandolfo 2011), 기형적 장문, 장황하고 중복적인 표현 등 일반 언어와 구분되는 법률 언어의 스타일은 번역 시 고려되는 문제이다. 또한, 이러한 법률 언어의 특성으로 인해 하나의 단어, 구, 문장이 한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애매성(ambiguity)<sup>2)</sup>이 존재하며, 번역 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국내 법률번역 연구 중 법률 언어 특유의 스타일과 애매성에 대한 번역가의 해석문제를 다룬 연구로는 이지은과 최효은(2020a, 2020b)과 유정주(2012, 2015, 2016a)가 있다. 이지은과 최효은(2020a)은 코퍼스 분석을 통해 한국 법령의 영어 번역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수동태 번역 경향을 고찰하였으며, 이지은과 최효은(2020b)은 한국어의 특징으로 꼽히는 특수한 통사적 형태인 이중주어 구문이 한국어 법령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고 영어 번역 양상을 분석하였다. 유정주(2015, 2016a)는 법률발화의 수행성(performativity) 특징을 중심으로 수행표지 ‘한다’와 ‘하여야 한다’, ‘shall’, ‘직설법 현재형 동사’의 번역 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유정주(2012)는 한국 법령에서 사용되는 ‘등’, ‘및’, 가운뎃점(·)의 애매성과 영어 번역에서의 해석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법률 언어 특성 차원의 법률 번역연구 외에 법률 커뮤니케이션 행

2) 학자들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법문의 구체적 적용 문제와 관련된 모호성(vagueness)의 문제는 법 이론에서 법학자들이 다루어야 할 문제인 반면, 법률번역과 연관된 해석의 문제는 주로 어의적 문제에 관한 애매성(ambiguity)의 차원에 해당한다(Varó and Hughes 2002: 26).

위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진행되었다. 법률번역은 단순한 언어적 변환이 아닌 규범에 지배받는 텍스트 생산 행위이자 상이한 언어 및 법체계 간 법률커뮤니케이션 행위로 볼 수 있다(Cao 2014: 422; Šarčević 1997: 47). 이러한 관점에서 법률 번역 텍스트의 법적 지위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Šarčević 1997: 20).

- 1) 해당 국가의 입법기관에 의해 법률의 일부로 채택되어 법적 효력을 갖는 정본 번역(authoritative translations, authentic texts)
- 2) 해당 국가가 서명한 했지만 법률로 채택하지는 않은 번역을 의미하는 공식본(official texts)
- 3)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작성한 번역을 의미하는 공식 번역(official translations)

법률번역을 법률커뮤니케이션 행위로 보면, 더 이상 원본에 대한 충실성(fidelity)에만 머물지 않고, 목표문화의 충분성(adequacy)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법률번역 텍스트가 목표문화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번역 시 고려 요소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본과 동등한 법적 지위와 효력을 가지는 정본번역의 경우, 가독성보다는 일관성 유지를 통한 동일 해석 및 적용이 가장 중요하다. 번역 과정에서 해당 정본 내의 용어 및 표현의 일관성 보장 과정인 ‘조율(harmonization)’과, 각 정본 간 용어 및 표현의 일관성 보장 과정인 ‘일치(concordance)’를 통해, 법원의 텍스트 해석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Šarčević 1997: 202-203; Cao 2007: 152). 반면, 정보 제공이나 참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식번역의 경우, 독자의 이해를 위해 법원의 동일한 해석 및 적용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목표언어 동일 장르의 수사관습(rhetorical conventions)에 부합하도록 조정을 할 수 있다. 법률 용어의 법적 등가의 수준 또한 번역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Šarčević, 2012: 198).

국내 법률번역 연구 중 법률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착안한 연구로는 정본번역인 조약의 일치성과 일관성 연구(유정주 2018, 2019), 공식 번역으로서 법령과 민원서식의 번역전략 및 평가모델 연구(유정주 2017a, 2017b), 법률 텍스트의 번역 기능에 따른 학생번역자의 개입 양상 연구(박미정 2013)가 있다. 또한, 법률용어 번역 평가 연구(김보경 2013; 서정목 2013; 유정주 2020)가 다양

한 언어 쌍에서 논의되었다.

한편 현재 법률텍스트의 기계번역을 다룬 국내 연구는 최효은과 이지은(2017)과 이상모(2021) 단 두 편이 검색될 뿐이며 법률텍스트 포스트에디팅을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중 이상모(2021)는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를 소개하고 기계번역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저작권법적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서 기계번역 실무와는 거리가 있다. 최효은과 이지은(2017)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한국어-영어 특허 기계번역 시스템 K2E-PAT(Korean to English Patent Automatic Translation Service) 결과물을 대상으로 품질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기계번역 결과물이 자동평가와 수동평가에서 모두 ‘요지 번역’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형적 문장, 문장성분 생략 등 특징을 가지는 법률 언어의 특징이 기계번역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문법적으로 완벽하며 짧은 문장이 기계번역에 이상적인 텍스트로 분류되기 때문이다(Plesco and Rychtycky 2012: 4). 법률텍스트 포스트에디팅에서는 이러한 법률 언어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계번역문의 문제점과 함께 번역 맥락에 따라 다양한 번역전략이 사용될 수 있는 법률 커뮤니케이션 행위로서의 법률번역 특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2.2 포스트에디팅 교육

포스트에디팅은 인간이 기계번역 결과물을 특정 가이드라인 및 품질 기준에 따라 수정하는 작업을 말한다(Mossop 2014: 199; O'Brien 2011: 197). 그간 포스트에디팅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포스트에디팅 품질, 수반되는 노력 등 실무 영역이었으며, 포스트에디팅 교육과정 수립, 교육사례와 같은 포스트에디팅 교육 관련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마승혜 2018; 이상빈 2017). 하지만 향후 포스트에디팅 물량이 증가하고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포스트에디팅 교육은 번역 교육에 필수적인 영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신지선(2020)은 포스트에디팅에 관한 해외 연구 동향을 15가지 주제로 분류하면서 이 중 특히 연구가 필요하고 주목해야 할 주제 중 하나로 포스트에디팅 교육 및 훈련을 제시한 바 있다.

국내 포스트에디팅 교육 연구는 주로 포스트에디팅 수업사례를 소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학부생의 한영 언어 쌍 포스트에디팅 수업 사례(김순미 2017, 이상빈 2017, 마승혜 2018), 학부생의 한중 언어 쌍 포스트에디팅 수업사례(김혜림 2020), 번역전공 석사생의 한일 언어 쌍 포스트에디팅 수업사례(박혜경 2018) 연구가 있다. 이 밖에 번역교육 경험이 포스트에디팅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서보현, 김순영 2020)도 진행되었다.

김순미(2017)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를 한국어→영어 프리에디팅(pre-editing)과 포스트에디팅을 모두 시행하도록 하고, 전 과정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진행하여 번역 교육에 기계번역 활용 가능성 및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원문 파악 능력 향상, 다양한 번역대안 제시, 기계와 친밀도 제고 등 장점도 있었으나, 기계에 대한 의존, 번역에 대한 흥미 저하, 기계번역 오류 수정의 번역교육 효과 등 문제도 관찰되었다.

이상빈(2017)은 학부생에게 질병관련 웹페이지 자료에 대한 영어→한국어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을 시행하도록 한 후,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관찰하였다. 분석 결과, (1) 원문과 기계번역문을 제대로 비교하지 않고 불완전한 ‘단일언어 포스트에디팅’(monolingual post-editing)에 의존하고, (2) 주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단어나 구 차원의 수정에만 집중하며, (3) 메시지 전달(transfer)에 집중한 반면, 언어와 문체(language)에는 소홀하고, (4) 의학용어 등 전문용어 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승혜(2018)는 학부생에게 정보적 텍스트, 설득적 텍스트, 표현적 텍스트에 대한 한국어→영어 포스트에디팅을 수행하도록 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어떤 텍스트 유형이 기계번역에 적합한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적 텍스트는 텍스트적 차원의 수정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설득적 텍스트는 언어적 차원 및 화용적 차원 수정이 많이 관찰되었다. 표현적 텍스트는 언어적, 텍스트적, 화용적 차원 모두 수정이 필요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정보적 텍스트가 포스트에디팅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혜림(2020)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정보적 텍스트와 설득적 텍스트의 중국어→한국어 포스트에디팅 연습을 진행하고,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을 분석하여 학부생들이 가장 많이 문제를 보인 사항 및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학부생들이 가장 문제를 많이 보인 부분은 의미의 정확성과 어휘였으며, 이상빈(2017)이 제시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단어나 구 차원의 수정, 메시지

전달에만 집중하며 문체 특징 및 번역의 기능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박혜경(2018)은 통역번역대학원 한일전공 학생들에게 정보적 텍스트와 표현적 텍스트에 대한 일본어→한국어, 한국어→일본어 포스트에디팅을 수행한 후, 작업 과정에 대한 소감을 보고서로 제출하게 하였다. 분석 결과, 석사생들은 포스트에디팅 시 원문과 기계번역문 대조가 가장 힘들고, 기계가 이미 번역을 해 놓아 원문을 깊이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밝혀, 불완전한 단일언어 포스트에디팅에만 의존하거나(이상빈 2017), 원문을 파악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김순미 2017)는 선행 연구결과와 차이점을 보였다.

서보현과 김순영(2020)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한국어-영어 번역 말뭉치 AI데이터 프로젝트에서 번역교육 경험이 서로 다른 번역사 3명의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오류 횟수는 번역교육 경험이 있는 번역사와 없는 번역사 간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오류 심각도는 번역교육 경험이 없는 번역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번역사마다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주제 분야가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이들 선행연구를 보면, 영어-한국어, 일본어-한국어, 중국어-한국어 언어 쌍 연구에서 자기소개서, 보고서, 기사, 칼럼, 연설문,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학부생 및 번역전공 석사생의 포스트에디팅 수업사례, 번역교육 경험의 포스트에디팅 품질에 대한 영향 등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포스트에디팅을 수행했을 때 수정 및 보완 사항, 필요한 교육과 적용 가능한 장르 등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으나, 기계번역 결과물은 언어별 혹은 장르별로 결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박혜경 2018: 167). 한국어-영어 연구를 수행한 이상빈(2017)에서는 질병관련 자료에 나오는 다양한 전문용어로 인해 기계번역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지만, 한국어-일본어 연구인 박혜경(2018)에서는 다수의 전문용어와 표현이 사용된 일본어 경제보고서 기계번역 품질이 괜찮았다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동일한 언어 쌍 연구에서 문학작품 등 표현적 텍스트보다 보고서와 같은 정보적 텍스트가 포스트에디팅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텍스트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마승혜 2018; 박혜경 2018).

이에 본 연구는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법률텍스트 중 법령을 대상으로 학부생과 번역전공 석사생에게 중국어-한국어 포스트에디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학생들의 포스트에디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중한 법령 포스트에디팅 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 3.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19년 1학기 필자가 통번역대학원에서 담당한 ‘일반번역’과 2019년 2학기 학부 전공수업 ‘중국어통번역’의 수강생이 제출한 중한 포스트에디팅 과제물이다. 수강생은 번역전공 석사생이 총 12명, 학부생이 총 35명이었다. 번역전공 석사생은 12명 중 2명이 중국 국적자였으며, 학부생은 35명 중 14명이 중국 국적자이었다. 본 연구는 중국어(B언어)→한국어(A언어)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을 관찰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분석대상은 한국인 수강생으로 한정하였다. 최종 분석자료는 번역전공 석사생 10명, 학부생 21명이 제출한 포스트에디팅 과제물이다. 2019년 1년간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을 수집하였으며, 2020년 관련 문헌조사와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업 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생과 번역전공 석사 수강생은 모두 번역 수업 또는 훈련을 받은 경험, 포스트에디팅 경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두 그룹 간 중국어 실력, 중국어 학습 기간, 통번역 경험에는 차이가 있었다. 번역전공 석사생은 번역에 필요한 고급 중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10명 중 6명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때부터 중국어를 학습하기 시작하여 중국어 학습기간이 10년 이상이었다. 또한, 번역전공 석사생 10명 중 7명은 통역이나 번역 아르바이트 해본 경험이 있었다. 반면, 학부생은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입학 후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어 학습기간이 5년 이하였고, 모두 통역이나 번역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었다.

분석 텍스트는 ‘中華人民共和國個人所得稅法(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법령을 사용하였다. 한국에서 국가 공공기관의 예산지원을 받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법령 번역은 공식번역으로서,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지는 정본번역과 달리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수신자의 이해에 초점을 둔다. 법령 전문(全文)을 번역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으므로, 제1조부터 제3조 제4항까지 총 583자 분량을 임의로 발췌하여 기계번역을 진행하고 포스트에디팅 연습을 진행하였다.

#### 3.2 분석방법

포스트에디팅 수업은 학부생과 번역 전공 석사생 모두 수업 후반부에 진행하였다. 포스트에디팅 전 법률텍스트 번역 연습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법률텍스트 번역의 특징과 주의사항을 사전에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전반기 법률텍스트 번역연습은 정본번역(한중영사협정) 텍스트로 연습하였으며, 법률언어의 특징과 함께 법적효력을 갖지 않는 공식번역과 비교하며 강의가 이루어졌다. 포스트에디팅 수업은 1차시에 기계번역과 포스트에디팅의 개념 및 가이드라인을 설명하였고, 2차시에는 학생들의 포스트에디팅 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요소를 어떻게 수정하였는지 함께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기계번역엔진은 무료 범용엔진인 네이버 파파고(Papago) 번역기를 사용하였다. 법률 분야 특화된 커스텀엔진을 사용하면 기계번역 품질이 더 우수할 수 있으나 커스텀엔진은 보안 문제로 외부에서 접근이 어렵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 현장에서는 접근성이 좋은 무료 범용엔진을 사용할 확률이 높다. 본 연구는 중국어-한국어 법령 포스트에디팅 교육을 위한 연구이므로 범용엔진 중 국내에서 중국어-한국어 번역에 활용도가 높은 네이버 파파고 번역기를 선택하였다. 포스트에디팅 과제는 원문과 함께 기계번역문을 함께 제공하였다. 기계번역문은 2019년 1학기 번역 전공 석사생 수업의 경우 2019년 5월 23일, 2019년 2학기 학부생 수업의 경우 2019년 11월 25일 동일하게 네이버 파파고를 활용하여 생성하였다. 약 6개월의 시간차가 나지만, 대조 결과 두 기간 기계번역문은 차이가 없었다. 과제 부여 시 원문, 기계번역문과 함께 포스트에디팅의 목적, 예상 독자, 번역요청 사항 등 번역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정보를 담은

번역브리프(Translation Brief)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번역브리프 제시 후 학생들에게 포스트에디팅 과제는 법적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번역임을 설명하였다.

법제처 산하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기관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주요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에서 최근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中華人民共和國個人所得稅法)'을 네이버 파파고 번역기를 활용해 중국어→한국어 번역한 후, 번역문과 중국어 본문을 대조하여 틀린 문구와 단어를 교정하도록 요청해왔습니다. 의무와 권한을 부과하는 법률텍스트 특징에 유념하여 번역해주시 바랍니다. 번역문은 MS word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은 윤미선, 김택민, 임진주와 홍승연(2018)이 해외 포스트에디팅 선행연구 가이드라인을 수정 보완한 영어-한국어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표 1>)을 활용하였다. 현재 중국어-한국어 언어 쌍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연구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연구로는 윤미선, 김택민, 임진주와 홍승연(2018) 외에 박건영(2021), 이주리에(2019), 한현희(2019)가 있다. 이 중 박건영(2021)은 한국어-영어 언어 쌍 연구이며, 이주리에(2019)는 한국어-일본어 언어 쌍, 한현희(2019)는 러시아어-한국어 언어 쌍 연구이다. 본 연구는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기계번역문의 포스트에디팅을 다루므로 동일하게 도착언어가 한국어인 윤미선(2018)과 한현희(2019)를 참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검토결과, 한현희(2019)는 가이드라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예문과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본격적인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연구로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윤미선 외(2018)의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을 수업에 활용하였다. 가이드라인의 각 항목은 예문과 함께 설명하여 학생들이 포스트에디팅 수행 전 가이드라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영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과 예시(2018) (윤미선 외 2018: 68)

본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은 '영한 기계번역 결과물'을 포스트에디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다음과 같이 포스트에디팅을 수행할 것을 권장한다. 1)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고 2) 포스트에디팅 된 텍스트가 논리적으로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

3) 단지 목표 텍스트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한 문장 재구성은 하지 않는다. 4) 문법과 언어의 사용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5) 구조적인 틀도 최대한 지켜야 한다.

항목	세부항목	가이드라인
의미 (Message)	정확성 (Accuracy)	• 원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완결성 (Completeness)	• 의도적으로 원문의 정보를 누락하거나 추가해서는 안 된다.
	일관성 (Consistency)	• 텍스트의 응결성을 고려하여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수정하고, 내용이 유기적이면서 논리적이도록 한다. • 텍스트 전체에서 용어나 표현 등이 통일성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언어와 문법 (Language & Grammar)	어휘 (Lexis)	• 해당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사용한다. • 맥락에 적합한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 언어, 관용구와 숙어, 문화적 용어 등의 사용이 올바르게 제시되어야 한다. •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목적과 상황을 고려한다.
	통사구조 (Syntax)	• 조사의 사용과 주술 호응이 올바르게 제시되어야 하는 등 문장 구조에 어색함이 없어야 한다.
	맞춤법 (Spelling)	• 오·탈자가 없고 띄어쓰기가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
	문장부호 (Punctuation)	• 문장부호 등에 오류가 없어야 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 한국어 맥락에 적절하지 않은 문장부호는 다른 문장부호로 대체해야 한다.
구조 (Structure)	문체 (Style)	• 어역(register)에 적합한 문체를 사용해야 한다. • 한국어로 된 유사한 텍스트에서 쓰이는 표현이나 어말어미로 수정한다.
	형식 (Format)	• 들여쓰기, 여백, 제목 및 소제목 설정 등에 문체가 없어야 한다. • 폰트, 글자크기, 볼드체, 밑줄설정, 각주, 목차, 괄호사용 등을 원문과 비교하여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한다.

<표 1>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은 크게 3개의 대 항목(의미, 언어와 문법,

구조)과 9개의 세부항목(정확성, 완결성, 일관성, 어휘, 통사구조, 맞춤법, 문장 부호, 문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에게는 <표 1> 가이드라인과 번역 브리프를 참조하여 ‘中華人民共和國個人所得稅法(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 세법)’ 법령 기계번역문에 대한 포스트에디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후 <표 1> 가이드라인의 항목에 따라 기계번역문 결과물에 나타난 오류를 검토하고, 이들 오류에 대한 학부생과 번역 전공 석사생의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중한 법령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을 고찰하였다.

#### 4.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중한 법령 기계번역 결과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들 문제점에 대한 학부생과 석사생의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을 분석한 후, 중한 법령 포스트에디팅 교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 4.1 기계번역 결과물 분석

기계번역 결과물은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중 의미, 언어와 문법, 구조 3개 항목에서 모두 문제점이 관찰되었다. 다음은 기계번역 결과물 예시이다.

예문1

ST3): 第一條 在中國境內有住所, 或者无住所而在境內居住滿一年的个人, 從中國境內和境外取得的所得, 依照本法規定繳納個人所得稅。在中國境內无住所又不居住或者无住所而在境內居住不滿一年的个人, 從中國境內取得的所得, 依照本法規定繳納個人所得稅。

MT: 제1조 중국내에 거소가 있거나, 주거지가 없이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은, 중국내와 국외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본법의 규정에

3) 편의상 중국어 원문 텍스트, 한국어 네이버 파파고 번역 텍스트를 각각 ST, MT로 약칭한다.

따라 개인 소득세를 납부한다.중국 내 무거주 또는 무거주 상태로 거주한 지 1년이 안 된 개인은 중국 내에서 취득한 소득을 본법에 따라 0 소득세를 낸다.

ST: 第二條 下列各項個人所得, 應納個人所得稅:

- 一、工資、薪金所得;
- 二、個體工商戶的生產、經營所得;
- 三、對企業事業單位的承包經營、承租經營所得;

MT: 제2조 다음 각호의 개인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임금, 임금소득:

둘째, 자영업의 생산, 경영소득

셋. 기업사업소의 하도급경영에 대하여 임차경영소득;

(중략)

ST: 第三條 個人所得稅的稅率:

- 一、工資、薪金所得, 適用超額累進稅率, 稅率為百分之三至百分之四十五 (稅率表附后)。
- 二、個體工商戶的生產、經營所得和對企業事業單位的承包經營、承租經營所得, 適用百分之五至百分之三十五的超額累進稅率 (稅率表附后)。
- 三、稿酬所得, 適用比例稅率, 稅率為百分之二十, 并按應納稅額減征百分之三十。

MT: 제3조 개인 소득세의 세율:

1. 급여, 급여 소득의 경우,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3 ~ 45%입니다(세율표 첨부 후).
2. 자영업 가구의 생산, 경영소득과 대기업 사업장의 하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은 5~30%의 초과 누진세율(세율표 첨부 후)을 적용한다.
3. 고료소득은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20%이고, 납부세액에 따라 3%를 감액한다.

##### 4.1.1 의미

###### (1) 일관성

먼저, MT에서는 ST의 동일한 용어가 다양한 형태로 번역되며 일관성에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용어의 일관성 문제는 조항 내, 조항 간에서 모두 관찰

되었다. 제1조에서 반복된 ‘住所’는 MT에서 ‘거소’, ‘주거지’, ‘거주’ 등으로 번역되었으며, 제2조의 ‘工資、薪金所得’, ‘個體工商戶的生產、經營所得’, ‘對企事業單位的承包經營、承租經營所得’가 제3조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음에도 MT에서는 각각 ‘임금, 임금소득’과 ‘급여, 급여 소득’과 같이 다르게 번역되었다. 법령문 작성 원칙상 여러 법령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경우 모든 법령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야 한다(Dorsey 2006: 183). 법령은 공공번역의 일환으로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문맥에 따라 용어를 다르게 번역하는 것은 해당 용어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게 만들어 정보제공에도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MT에는 용어 외에 통사구조의 일관성 문제도 관찰되었다. 일반 텍스트의 경우 문체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같은 표현을 조금씩 변형할 수 있으나, 법률텍스트는 동일한 해석 및 적용에 문제가 없어야 하므로, 통사구조가 동일한 문장은 번역문에서도 동일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ST 제1조에서 통사구조가 동일한 두 개 문장은 MT에서 ‘본법의 규정에 따라’와 ‘본법에 따라’ 등과 같이 다르게 번역되었다.

## (2) 정확성

또한 MT에서는 ST의 의미가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은 문제도 관찰되었다. 정확성 문제는 범위한정 용어와 수치 번역에서 나타났다. ST 제1조 ‘住滿一年의個人’은 MT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으로 번역되었다. 중국 ‘民法通則’에 따르면, ‘以上’, ‘以下’, ‘以內’, ‘屆滿’은 해당 수를 포함하고, ‘不滿’, ‘以外’는 해당 수를 포함하지 않는다(劉會春 2006: 53). 따라서 ST의 ‘住滿一年’은 ‘만 1년이 된 개인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 언어는 사람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칙을 기술하거나 형성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거주 기간 범주는 개인소득세 납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법령 번역에서는 이러한 범위한정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여 번역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ST 제3조 제3항의 ‘百分之三十(30%)’가 MT에서 ‘3%’로 잘못 번역되기도 하였다.

## (3) 완결성

MT에서 ST의 정보가 누락되는 완결성 문제도 관찰되었다. 제1조의 ST ‘在中國境內有住所, 或者無住所而在境內居住滿一年的個人’은 MT에서 ‘중국 내에 거소가 있거나, 주거지가 없이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은’으로 번역되며 후행절의 ‘在境內’가 생략되었다. 또한 제1조 두 번째 문장 ST ‘依照本法規定繳納個人所得稅’는 MT에서 ‘본법에 따라 1 소득세를 낸다’로 번역되며 ‘個人’이 생략되었다. 첫 번째 예문의 경우 선행절에서 ‘境內(중국내)’가 번역되었으므로 후행절에서 생략되어도 의미상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반 텍스트 번역에서 맥락 상 알 수 있는 정보는 완결성 차원에서 생략될 수 있으나, 법률 텍스트 번역의 경우 중복이나 반복의 특징은 의미 전달과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임의로 삭제하거나 간결하게 바꾸는 일은 피해야 한다(劉會春 2006: 54). 또한 법률텍스트 문장은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하나로 구성되면서 길고 복잡해졌으며, 관습대로 의미 중복 표현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Tiersma 1999: 56, 59). 따라서 이러한 법률텍스트의 기능과 문체적 특징을 감안할 때, ST의 정보가 빠짐없이 번역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 4.1.2 언어와 문법

### (1) 어휘

법률번역에서 정확한 등가어의 결정은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지목된다. 서로 다른 법체계 간 개념상의 내재적 불일치로 인해, 목표 법체계에서 원천 용어와 관련된 개념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완전한 등가어를 찾는 일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유정주 2020: 90). 제2조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을 보면, ST의 ‘工資’와 ‘薪金’이 MT에서 동일하게 ‘임금’으로 번역되는 등 어휘 번역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제도 차이로 인해 중국의 소득 개념과 범위는 한국과 차이가 있다. ‘工資、薪金所得’는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하는 한국의 ‘근로소득’과 비슷하나, 세부적으로 보면 독생자녀보조금과 공무원급여제도에서 공무원기본급여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보조금, 수당차액과 가족의 부식 보조금 및 탁아보조금 그리고 출장수당, 식대보조금(식대보조금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수당 등 제외)을 포함하지 않는다(김경환 외 2015: 54-55). 또한, ‘個體工商戶’는 한국의 ‘개인



사업자'와 비슷하지만, 중국 국적자가 아닌 자는 '个体工商户'로 등록할 수 없다.

법률 번역의 목표를 동일한 의미가 아닌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 병렬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으로 볼 때, 법률 용어의 법적 등가 수준은 텍스트의 유형과 번역 기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Sarčević 2012: 198). 최고 수준의 정확성과 엄밀성이 요구되는 정보번역의 경우에는 부분등가 관계에 불과한 기능적 등가어 대신 중립적 용어나 축약적 등가어를 사용해야 하며, 정확성에 대한 요구가 보다 낮은 정보적 성격의 비정보 번역에만 기능적 등가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Soriano-Barabino 2016: 18).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공식번역인 법령으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보 번역이다. 따라서 원천 법체계 용어와 의미와 기능 면에서 유사한 기능적 등가어를 사용하여 원천 법체계의 용어를 목표 언어와 목표 법체계에 동화시키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工資、薪金所得'와 '生產、經營所得', '承包、承租經營所得'는 각각 한국 법체계에서 유사한 소득을 칭하는 '근로소득(工資、薪金所得)'과 '사업소득(生產、經營所得)', '수탁경영 및 임차경영소득(承包、承租經營所得)' 등으로 번역하고 괄호 안에 중국 소득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 '个体工商户' 또한 '자영업자'로 번역하되 중국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는 주석을 추가할 수 있다.

(2) 통사구조, 문장부호, 맞춤법

통사구조 문제는 ST의 긴 복문과 중국 고유의 문장부호가 사용된 문장에서 관찰되었다. 제1조에서 ST의 긴 복문 '在中國境內有住所，或者无住所而在境內居住滿一年的个人，從中國境內和境外取得的所得，依照本法規定繳納個人所得稅'가 MT에서 '중국내에 거소가 있거나, 주거지가 없이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은, 중국내와 국외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본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납부한다'로 번역되었는데, '개인은', '소득은'처럼 조사 '은'이 반복되며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여기서 '소득은'은 '소득에 대하여'로 수정해야 한다. 또한, 제2조 제3항 '對企事業單位的承包經營、承租經營所得'는 MT에서 '기업사업소의 하도급경영에 대하여 임차경영소득;'으로 번역되었다. 중국어에서 頓號(、)는 병렬관계에 있는 단어 사이의 휴지를 나타내므로 '承包經營、承租經營所得'는 '수탁경영·임차경영소득'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하지만 MT에

서는 頓號 이전까지 의미단위를 나누며 '-에 대하여 임차경영소득'과 같이 문장성분 호응에 문제가 나타났다.

문장부호 문제는 한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나 중국어에는 있는 문장부호 冒号(：), 分号(；) 번역에서 발생하였다. 중국 법령은 조, 항, 호, 목 간 상/하위 항목의 구분은 冒号(：)로 표시하고, 동위 항목의 구분은 分号(；)로 표시한다(이상모 외 2019: 518). 이들 문장부호는 한국어 맞춤법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생략해야 한다. 하지만 MT는 '1, 임금, 임금소득;', '제3조 개인 소득세의 세율:' 등 冒号(：), 分号(；)가 생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번역되었다.

맞춤법은 주로 띄어쓰기 문제로 나타났다. MT는 '개인 소득세를 납부한다. 중국 내 무거주 또는 무거주 상태로' 등과 같이 문장 간, 단어 간 띄어쓰기 문제가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4.1.3 구조

MT에서 구조 문제는 문체와 형식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문체 관련, MT에서는 어역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 관찰되었다. 제1조 ST '依照本法規定繳納個人所得稅'는 MT에서 '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낸다'로 번역되었는데, 법률 언어의 특징 중 하나가 격식성인 만큼 '繳納'는 '낸다'보다는 '납부한다'로 번역해야 한다.

다음으로 형식 관련, 중국어는 아라비아 숫자 뒤에 온점(.)을 사용하나, 한자로 숫자를 쓸 때는 '一、二、三、四'처럼 頓號(、)를 사용한다. 따라서 頓號(、)를 온점(.)으로 바꿔주어야 하지만, MT에서는 '1,과 같이 반점(、)으로 번역한 문제가 나타났다. 이 밖에 MT에서 제2조의 각 항이 '1, 둘째, 셋.' 등으로 한국어 법령 형식에 맞지 않게 번역되었다. 2019년 법제연구원에서 제작한 「아시아 법령번역 사업- 중국·베트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조, 항, 호, 목 표기는 <표 2>와 같이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법령으로서 정보제공과 독자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인 만큼, 한국 법령의 형식에 맞추어 번역할 필요가 있다.

〈표 2〉 한중 법령체계의 표기

구분	원문 표기	번역 표기
조	제1조	第0條
항	①②	(一) (二)
호	1.2.3	1.2.3
목	가. 나	、 、 、

## 4.2 학생 포스트에디팅 결과물 분석

### 4.2.1 의미

#### (1) 일관성

동일한 ST 용어가 MT에서 다양한 형태로 번역된 일관성 문제 관련, 학생들은 조항 내 일관성 문제는 대부분 수정하였으나, 조항 간 일관성 문제는 잘 수정하지 못하였다. 또한 조항 내 일관성 문제를 수정하더라도 단어나 구 차원 수정에 머물며 선후 문장 간 용어 일치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다음은 조항 내 일관성 문제를 수정한 사례이다.

#### 예문2

ST: 第一條 在中國境內有住所, 或者无住所而在境內居住滿一年的个人, 從中國境內和境外取得的所得, 依照本法規定繳納個人所得稅。在中國境內无住所又不居住或者无住所而在境內居住不滿一年的个人, 從中國境內取得的所得, 依照本法規定繳納個人所得稅。

MT: 제1조 중국내에 거소가 있거나, 주거지가 없이 0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은, 중국내와 국외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본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납부한다.중국 내 무거주 또는 무거주 상태로 거주한 지 1년이 안 된 개인은 중국 내에서 취득한 소득을 본법에 따라 0 소득세를 낸다.

PE54(석): 제1조 중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주소가 없이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은 본 법률규정에 따라 중국 국내와 국외에서

4) 포스트에디팅(post-editing)은 ‘PE’로 약칭한다. 석사생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은 PE(석), 학부생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은 PE(학)으로 표기한다. 학생들의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은 각각 숫자로 분류하여 ‘PE1(석), PE2(석) …’ 또는 ‘PE1(학)1, PE2(학)…’ 등으로 표기한다.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한다. 중국 내 무거주지 비거주 또는 무거주지 상태로 1년 이하 거주한 개인은 본 법률규정에 따라 중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PE2(학): 제1조 중국 내에 거소가 있거나, 주거지가 없이 중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은 본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내와 중국 외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한다. 중국 내에 거주하지 않으며 거주지도 없는 경우와 거주지가 없는 상태로 중국에서 거주한 지 1년이 안 된 개인 또한 중국 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낸다.

예문2를 보면, 예문1 ST 제1조에서 반복되는 ‘住所’를 학부생과 석사생 모두 ‘주소’ 또는 ‘거주지’ 등으로 수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동일 문장 안에서 ‘住所’는 용어를 어느 정도 통일하였으나,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과 선행 문장 간 용어를 통일시키지는 못하였다.

조항 간 용어 일관성 문제는 학생들이 대부분 잘 수정하지 못했다.

#### 예문3

ST: 第二條 下列各項個人所得, 應納個人所得稅:

- 一、工資、薪金所得;
- 二、個體工商戶的生產、經營所得;
- 三、對企業事業單位的承包經營、承租經營所得;

MT: 제2조 다음 각호의 개인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임금, 임금소득;

둘째, 자영업의 생산, 경영소득

셋, 기업사업소의 하도급경영에 대하여 임차경영소득;

PE7(석): 제2조 1. 임금, 근로소득

(중략)

제3조 개인 소득세의 세율

1, 급여, 근로소득의 경우,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3% ~ 45%이다.(세율표 첨부)

PE17(학): 제2조 1. 임금, 임금소득;

(중략)

제3조 개인 소득세의 세율:

1. 급여, 급여 소득의 경우,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3 ~ 45%이다(세율 계산표 첨부 후).

많은 학부생들이 예문3 PE17(학)과 같이 기계번역 결과물을 그대로 두며 일관성 문제를 수정하지 않았다. 이는 ‘어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학부생들은 한국과 다른 중국의 소득 개념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며 수정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석사생들은 대부분 제2조의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 용어를 수정하였으나, 역시 제2조와 제3조 간 용어를 통일시키지는 못했다. 통사구조 일관성 문제는 석사생의 경우 대부분 예문2 PE5(석)과 같이 ST의 ‘依照本法規定’을 ‘본 법률규정에 따라’로 통일하고 제1조의 선후 문장 통사구조를 통일시켰다. 하지만, 학부생은 대부분 통사구조 일관성 문제를 수정하지 않았다.

(2) 정확성과 완결성

MT에 나타난 범위한정 용어의 정확성 문제는 학생들이 적절하게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문2를 보면, 학부생과 석사생 모두 ST ‘住滿一年’의 MT ‘1년 이상’을 수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예문2 PE5(석)는 ST ‘不滿一年’의 MT ‘1년이 안 된’을 ‘1년 이하’로 수정하였는데, 중국 법령에서 ‘不滿’은 해당 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1년 이하’로 수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학생들이 규제적 성격을 띠는 법률텍스트의 범위한정 정확성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학부생의 경우 가독성을 고려하여 MT를 과감하게 변경하거나 중국어 실력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MT를 더 나쁘게 수정하여 정확성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다. 다음은 관련 예시이다.

예문4

ST: 第一條 在中國境內有住所, 或者无住所而在境內居住滿一年的个人, 從中國境內和境外取得的所得, 依照本法規定繳納個人所得稅。

MT: 제1조 중국내에 거소가 있거나, 주거지가 없이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은, 중국내와 국외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본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납부한다.

PE9(학): 제1조 중국 경내에 거주하거나, 주거지가 없이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은 중국 경내와 국외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본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납부한다.

PE19(학): 제1조 중국 내에 주거지가 있거나, 혹은 거주지 없이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은, 중국 내외로부터 얻은 소득 일부를 본국의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로 납부한다.

PE9(학)는 ST의 ‘在中國境內有住所’의 MT ‘중국내에 거소가 있거나’를 ‘중국 경내에 거주하거나’로 수정하였다. 하지만 ‘거주지가 있다’와 ‘거주하다’는 서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PE19(학)에서는 MT의 ‘소득’을 ‘소득 일부’, ‘본법의 규정’을 ‘본국의 규정’으로 수정하며 ST의 의미가 왜곡되었다.

다음으로 완결성 관련, 학생들은 대부분 MT에 누락된 ST의 정보를 수정하지 못하였다. 예문2를 보면, ST의 ‘无住所而在境內居住滿一年的个人’ 중 ‘境內’, ‘依照本法規定繳納個人所得稅’ 중 ‘个人’이 누락되었으나 학부생과 석사생 모두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특히 학부생의 경우, MT에 누락된 정보를 수정하지 못한 문제 외에 MT의 정보를 임의 생략하며 완결성에 문제가 생긴 사례도 관찰되었다.

예문5

ST: 一、工資、薪金所得, 適用超額累進稅率, 稅率為百分之三至百分之四十五。(稅率表附后)。

MT: 1, 급여, 급여 소득의 경우,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3 ~ 45%입니다(세율표 첨부 후).

PE2(학): 1. 임금, 봉급의 소득은 초과액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세율이 3%~45%이다. 0

예문5에서 ST ‘稅率表附后’는 MT에서 ‘세율표 첨부 후’로 번역되었으나, PE2(학)은 이를 생략하여 ST 정보가 누락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석사생 포스트

에디팅에서 관찰되지 않았는데, 학부생의 단순 부주의일 수도 있으나, 반복적으로 생략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중국어 실력 부족으로 인해 ‘稅率表附后’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색하다고 생각한 해당 문구를 생략한 것으로 판단된다.

#### 4.2.2 언어와 문법

##### (1) 어휘

어휘 문제는 학생들의 포스트에디팅에서 가장 다양한 형태의 수정이 나타나며 적절히 수정되지 못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어휘에 해당하는 법률용어 포스트에디팅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관련 예문이다.

##### 예문6

ST: 一、工資、薪金所得;

二、个体工商戶的生產、經營所得;

三、對企事業單位的承包經營、承租經營所得;

四、勞務報酬所得;

MT: 1, 임금, 임금소득;

둘째, 자영업의 생산, 경영소득

셋. 기업사업소의 하도급경영에 대하여 임차경영소득;

4. 노무보수소득

PE7(석): 1. 임금, 근로소득

2. 자영업자의 생산, 경영소득

3. 기·사업체의 도급경영 및 임대경영 소득

4. 근로소득

PE17(학): 1. 임금, 임금소득;

2. 개인 사업, 경영소득

3. 기업 사업 단위의 도급경영이나 임대 경영 소득;

4. 노무보수소득

예문6을 보면, 학부생은 PE17(학)과 같이 기계번역기의 법률용어 번역을 그대로 사용하며 수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석사생은 대부분 해당 법률용어를 수정하였으나, PE7(석)과 같이 MT의 ‘임금, 임금소득’을 ‘임금, 근로소득’으로 수정하며 유사한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데 그치거나, 수정 결과 ‘薪金所得’

와 ‘勞務報酬所得’를 모두 ‘근로소득’으로 번역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법률용어는 번역의 맥락과 목적에 따라 기능적 등가어 또는 어휘확장을 통해 개념 차이를 보상하거나, 형식적 등가, 차용 등 다양한 번역전략이 취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학부생 포스트에디팅에서는 다음 예문7과 같이 법률용어 번역 시 각주를 달아 설명을 추가한 사례도 관찰되었다.

##### 예문7

PE7(학): 1. 임금, 급여소득

2. 자영업자의 생산, 경영소득

3. 기·사업체의 도급경영 및 임대경영 소득

4. 노무보수소득

(각주) 노무보수소득은 급여소득과는 달리, 개인이 독립적으로 비용(안정적이고 연속적이지 않은 인사관계, 노동계약관계가 아닌)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여 얻는 소득이다

예문7에서 학생은 법령 번역이 정보제공 목적의 비정본 번역이라는 점과 원천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완전한 등가어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주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个体工商戶’는 기능적 등가어인 ‘자영업자’로 번역하면서 ‘勞務報酬所得’는 형식적 등가어 ‘노무보수소득’에 각주를 추가하는 등 전체 법률용어의 번역전략이 통일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 (2) 통사구조, 문장부호, 맞춤법

길이가 긴 ST 복문의 통사구조 번역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이 잘 수정하였다. 이는 MT 자체만 보아도 어색한 통사구조 문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T와 MT 대조가 필요한 중국어 고유의 문장부호가 사용된 문장의 통사구조 문제는 학부생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절히 수정되지 못한 사례가 관찰되었다.

예문8

- ST: 三、對企事業單位的承包經營、承租經營所得 ;  
 MT: 셋. 기업사업소의 하도급경영에 대하여 임대경영소득;  
 PE8(학) : 셋. 기업사업의 하도급경영에 대한 임대경영소득;  
 PE17(학): 3. 기업 사업 단위의 도급경영이나 임대 경영 소득;

예문8에서 頓號(、)는 병렬관계에 있는 단어 사이의 휴지를 나타내므로, ‘承包經營’과 ‘承租經營所得’를 병렬관계로 보아야 하나 MT에서는 頓號 이전까지 의미단위가 나뉘며 문장성분 호응이 맞지 않는 통사구조 문제가 발생하였다. 학부생들은 MT의 통사구조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수정하였지만, PE8(학)과 같이 ST 의미는 검토하지 않은 채 문장성분 호응만을 수정하거나 PE17(학)과 같이 ‘-이나’의 선택관계로 수정하며 ST의 병렬관계 의미가 왜곡된 경우가 있었다. 이를 통해 학부생의 경우 중국 고유의 문장부호의 용법과 ST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며, ST와 MT를 제대로 비교하지 않고 불완전한 단일언어 포스트에디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T의 冒号(：), 分号(；) 번역에서 발생한 문장부호 문제와 띄어쓰기 문제는 학부생과 석사생 모두 수정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관찰되었다. 포스트에디팅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은 ‘메시지 전달’에 집중한 반면, ‘언어와 문체’에는 소홀하다는(Mossop 2014, 이상빈 2017) 점이 보고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비슷한 특징이 관찰되었다. 학부생과 석사생 모두 메시지 전달에만 신경 쓰며, MT에 남아 있는 중국어 문장부호나 한국어 띄어쓰기 문제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 4.2.3 구조

법령문 어역에 적합하지 않은 MT의 문체 문제는 학부생과 석사생 모두 절반 정도만 수정하는 데 그쳤다. 또한, MT에서 각 항이 ‘1, 둘째, 셋.’ 등으로 한국어 법령 형식에 맞지 않게 번역된 문제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이 ‘1, 둘째, 셋.’을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수정하였으나, ST의 ‘一、’이 MT에서 ‘1,’로 번역되며 문장부호가 한국 법령 형식에 맞지 않는 문제는 수정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학생들이 포스트에디팅 시 ‘언어와 문체’ 수정에는 소홀

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3 중한 법령 포스트에디팅 교육에 대한 논의

포스트에디팅 결과물 검토 결과, 학생들은 MT에 나타난 일관성, 정확성, 완결성, 어휘, 통사구조, 문장부호, 맞춤법, 구조 문제를 모두 적절히 수정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사구조 문제의 경우 번역전공 석사생은 대부분 잘 수정하기도 하였으나, 그 외 항목에서는 번역전공 석사생과 학부생 모두 MT의 문제를 적절하게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일관성 문제 관련, 학생들은 서로 다른 조항 간 용어의 일관성 문제를 수정하지 못하였다. 특히 석사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통사구조 일관성 문제는 수정하면서 서로 다른 조항 간 또는 조항 내 서로 다른 문장 간의 용어 일관성 문제는 수정하지 않았다. 이는 학생들은 문맥에 따라 용어를 변형하기도 하는 일반텍스트 번역과 달리 법률텍스트에서는 동일한 해석에 문제가 없도록 법령 전체에서 동일한 용어를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정확성과 완결성 문제 관련, 학생들은 범위한정 용어의 정확성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대부분 수정하지 않았으며, 누락된 ST의 정보를 수정하지 않았다. 특히 학부생의 경우 가독성을 고려하여 MT를 과감하게 변경하거나 MT 정보를 임의 생략하며 정확성과 완결성 문제를 심화시킨 사례도 관찰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법률 언어는 동일한 해석 및 적용에서 문제가 없도록 고도의 정확성이 요구되며, 일반텍스트에서 응결성 차원에서 생략될 수 있는 정보도 법률텍스트에서는 중복하거나 반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독성과 표현의 자연스러움만을 고려하며 포스트에디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령 포스트에디팅 교육에서는 일반텍스트와 다른 법률 언어 및 법률텍스트의 기능과 문체적 특징을 충분히 설명하고, MT에 발생하는 정확성, 완결성, 일관성 문제에 주의하여 포스트에디팅 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어휘 문제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문제였다. 학부생은 많은 경우 MT의 법률용어 번역을 그대로 두고 수정하지 않았으며, 석사생은 대부분 수정하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유사한 다른 표현으로 수정하는 데 그쳤다. 서로 다른 법체계 간 개념 상의 내재적 불일치로 인해 원천 용어의 개

념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완전한 등가어를 찾는 일은 대부분 불가능하며, 법률 용어 번역은 번역 목적에 따라 기능적 등가어, 어휘확장, 축자적 등가어와 각주 등 다양한 번역전략이 취해질 수 있다. 기계번역이 완전한 등가어를 찾기 어렵고 번역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법률용어를 만족스럽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률용어 포스트에디팅에서 포스트에디터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령 포스트에디팅 교육에서는 기능적 등가어, 각주 추가 등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공식번역에서 취할 수 있는 법률용어 번역전략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사구조 문제는 석사생의 경우 잘 수정하였으나, 학부생은 ST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며 ST와 MT를 제대로 비교하지 않고 불완전한 단일언어 포스트에디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석사생과 달리 학부생은 중국어 실력 부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포스트에디팅 선행연구에서도 학부생은 단일언어 포스트에디팅의 문제가 있고 석사생은 이와 반대로 ST와 MT 대조를 가장 힘들어한다는 점이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비슷한 특징이 관찰되었다. 기계번역의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면 단일 언어 포스트에디팅이 가장 편리한 작업 방법이나, 현재 범용 기계번역엔진의 중한 번역 품질은 단일언어 포스트에디팅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법령 포스트에디팅 교육 시 ST와 MT 대조의 필요성을 설명하되 MT에서 발생하는 통사구조 오류 패턴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포스트에디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어 문장부호(冒号 : , 分号 ; ), 맞춤법, 법령 어역에 맞지 않는 문체, 형식 문제는 학부생과 석사생 모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수정하지 않았다. 이는 학부생 포스트에디팅 선행연구(이상빈 2017, 김혜림 2020)에서도 관찰된 특징으로 석사생 역시 같은 문제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학부생과 석사생 모두 포스트에디팅 시 ‘메시지 전달’에만 집중하며, ‘언어와 문체’에는 소홀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 번역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위해 동일한 해석 및 적용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목표언어 동일 장르의 수사관습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법령 포스트에디팅 교육 시 한국 법령의 관습에 맞지 않는 문장부호, 문체와 형식 문제 수정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학부생과 번역전공 석사생에게 ‘中華人民共和國個人所得稅法(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총 583자 분량에 대한 중국어-한국어 포스트에디팅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물을 석하여 중한 법령 포스트에디팅 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 고찰하였다.

법률 언어는 사람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칙을 기술하거나 형성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정확성이 요구되며, 기형적 장문, 장황하고 중복적인 표현 등의 어휘적, 구문적 특징을 가진다. 또한 법률텍스트 번역은 상이한 언어 및 법체계 간 법률 커뮤니케이션 행위로서 번역 목적과 기능에 따라 번역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원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정본번역은 법률용어 번역 시 중립적 용어나 축자적 등가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정확성에 대한 요구가 보다 낮은 비정본 번역은 부분등가 관계인 기능적 등가어를 사용할 수 있다. MT는 이러한 법률 언어 및 법률 번역의 특징이 고려되지 못한 채 정확성, 완결성, 일관성, 어휘에서 문제를 나타냈다. 범위한정 용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번역되지 못했으며, ST 정보 누락이 발생하였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동일한 통사구조가 일관되게 번역되지 못했으며, 완전한 등가어가 없는 중국 소득명칭 번역이 기능적 등가어와 축자적 등가어가 혼재되며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학부생과 번역전공 석사생의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을 검토한 결과, 학생들은 가독성과 표현의 자연스러움만을 고려하며 MT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확성, 완결성, 일관성 문제를 적절히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법령 포스트에디팅 교육 시 일반텍스트와 다른 법률 언어 및 법률텍스트의 기능과 문체적 특징을 충분히 설명하고, MT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확성, 완결성, 일관성 문제관련 문제에 주의하여 포스트에디팅 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어휘 문제는 학생들이 포스트에디팅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였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법체계 간 완전한 등가어를 찾기 어려운 법률용어 번역이 번역목적에 따라 다양한 번역전략이 취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MT의 법률용어 번역을 그대로 두거나 유사한 표현으로 수정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법령 포스트에디팅 교육에서는 기능적 등가어, 각주 추가 등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공식번역에서 취할 수 있는 법률용어 번역전략에 대한 설

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사구조 문제는 석사생과 학부생이 차이를 보였다. 석사생은 통사구조 문제를 잘 수정하였으나, 학부생은 ST와 MT를 제대로 비교하지 않고 불완전한 단일언어 포스트에디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부생이 중국어 실력 부족으로 인해 ST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령 포스트에디팅 교육 시 ST와 MT 대조의 필요성을 설명하되 MT에서 발생하는 통사구조 오류 패턴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포스트에디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중국어 문장부호, 맞춤법, 법령 어역에 맞지 않는 문체, 형식 문제는 학생들이 잘 수정하지 못했다.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 번역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위해 동일한 해석 및 적용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목표언어 동일 장르의 수사관습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 포스트에디팅 교육 시 한국 법령의 관습에 맞지 않는 문장부호, 문체와 형식 문제 수정에 주의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는 포스트에디팅의 개념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간략한 사전 교육을 진행한 후 1개 법령텍스트로 포스트에디팅 수업을 진행한 예비연구로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학생들의 포스트에디팅 결과물 분석만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어떤 이유와 배경에서 포스트에디팅을 수행했는지 그 과정을 관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은 법률텍스트인 법령을 대상으로 중국어-한국어 언어 쌍의 포스트에디팅 교육 사례를 수집하고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향후 포스트에디팅 적용 사례를 추적하고 학생들의 포스트에디팅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회고 인터뷰(retrospective interview)를 실시한다면 중간 법령 포스트에디팅 교육에서 어떤 점을 가르쳐야 하는지 보다 심도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환, 하능식 (2015) 중국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 김보경 (2013) 한·중 법률용어 번역의 등가관계, 박사학위논문.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 김순미 (2017) 「신경망번역기(NMT) 활용 학부 번역교육의 가능성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15(3): 5-87.
- 김순미, 신호섭, 이준호 (2019) 「번역학계와 언어서비스업체(LSP)간 산학협력연구: ‘포스트에디팅 생산성’과 ‘기계번역 엔진 성능 비교」, 『번역학연구』 20(1): 41-76.
- 김혜림 (2020) 「학부생 번역자의 중간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사례연구」, 『중국언어연구』 91: 383-414.
- 마승혜 (2018) 「한영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에 대한 경험적 고찰: 학부 교육 과정 및 결과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2(1): 53-87.
- 박건영 (2021) 「정보성 텍스트의 한영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제시-신경망 기계번역 (NMT) 을 사용한 뉴스 기사문 번역의 사례」, 『번역학연구』 22(1): 109-137.
- 박미정 (2013) 「번역 학습자의 ‘voice’ 선택과 개입: 법률텍스트 ‘전문용어’ 일한번역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4(1): 99-125.
- 박혜경 (2018) 「석사 과정의 기계번역 수업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19(3): 163-193.
- 서보현, 김순영 (2020) 「번역사의 번역교육 경험이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21(3): 63-91.
- 서정목 (2013) 「법률번역에 있어서 전문용어의 번역에 관한 연구」, 『영어영문학』 18(2): 107-144.
- 신지선 (2020)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관한 해외 연구 동향」, 『번역학연구』 21(4): 87-114.
- 유정주 (2012) 「법령어의 애매성과 번역가의 해석문제」, 『번역학연구』 13(5): 109-141.
- 유정주 (2015) 「법령화행에서 ‘한다’와 ‘하여야 한다’의 번역문제: ‘shall’의 사

용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6(2): 105-137.

유정주 (2016) 「법령번역에서 직설법 현재형 동사의 사용 제한 - 비 번역 영미법 코퍼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8(2): 99-128.

유정주 (2017a) 「다문화사회의 공문서 번역 전략: 민원서식 한영 번역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25: 41-75.

유정주 (2017b) 「법률번역 평가를 위한 텍스트일치성 측정 모델 제안, 『통역과 번역』 19(2): 101-130.

유정주 (2018) 「FTA 시간 표현의 번역문제: ‘before’와 ‘after’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9(3): 195-225.

유정주 (2019) 「정본번역의 용어일관성 사례연구-투자보장협정의 법인 관련 용어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3(4): 169-201.

유정주 (2020) 「법률번역에서 등가의 의미와 비교법적 분석사례-‘특수관계인’의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4(4): 83-115.

윤미선, 김택민, 임진주, 홍승연 (2018) 「영어-한국어 언어쌍에 적합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번역학연구』 19(5): 43-76.

이상모 (2021) 「기계번역을 활용한 법령번역의 실제와 과제」, 『T&I review』 11: 35-56.

이상모, 김지훈, 박세훈, 정혜진, 정소라 (2019) 아시아 법령번역 사업 - 중국·베트남 -, 한국법제연구원.

이상빈 (2017) 「학부번역전공자의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 『통역과 번역』 19(3): 37-64.

이주리에 (2019) 「한일 헤드라인 번역의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고찰」, 『통역과 번역』 21(2): 119-144.

이지은, 최효은 (2020a) 「코퍼스 연구를 통해 살펴본 법령 번역 텍스트의 언어적 특성: 수동태 구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1(2): 251-284.

이지은, 최효은 (2020b) 「한영 법령 번역에서 이중주어 구문 번역 양상, 『통번역학연구』 24(3): 97-135.

장소원 (2009) 「법률 텍스트 문장의 문법성, 『텍스트언어학』 27: 1-29.

정호정 (2013) 「공공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 시스템 연구-유럽연합 3 대 번역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5(2): 215-248.

최효은, 이지은 (2017) 「특허 기계번역 결과물의 평가-KIPRIS 의 무료 한영 기계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9(1): 139-178.

한현희 (2019) 「노한 기계번역의 프리에디팅 (pre-editing) 및 포스트에디팅 (post-editing) 가이드라인 제안, 『노어노문학』 31(4): 65-96.

劉會春 (2006) 「試論法律語言對漢語法律條文英譯的影響, 『井岡山大學學報: 社會科學版』 (3): 51-54.

胡大偉 (2005) 「英漢法律語言特点比較」, 『大理學院學報: 綜合版』 4(2): 49-53.

Cao, Deborah (2007) *Translating Law*, Clevedon/Buffalo/Toronto: Multilingual Matters.

Cao, Deborah (2014) ‘Legal translation studies’, in Carmen Millan and Francesca Bartrina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415-424.

Colson, Jean-Pierre (2008) ‘Cross-linguistic phraseological studies’, in F. M. Sylviane Granger and Fanny Meunier (ed.) *Phraseology: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91-206.

Doherty, Stephen (2016) ‘The Impact of Translation Technologies on the Process and Product of Trans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0: 947-69.

Dorsey, Tobias A. (2006) *Legislative drafter's deskbook: a practical guide*, Alexandria, VA: TheCapitol.Net.

Mellinkoff, David (1963) *The language of the law*, Oregon: Resource.

Mossop, Brian (2014) *Revising and Editing for Translators*, third edi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O'Brien, Sharon (2011) ‘Towards predicting post-editing productivity’, *Machine translation* 25(3): 197-215.

Plesco, Craig and Nestor Rychtycky (2012) ‘Machine Translation as a Global Enterprise Service at Ford’, in *Proceedings of the 10th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Machine Translation in the Americas: Commercial*



*MT User Program.*

- Pontrandolfo, Gianluca (2011) 'Phraseology in criminal judgments: A corpus study of original vs. translated Italian', *Sendebare* 22: 209-234.
- Raído, Vanessa Enríquez (2016) 'Translations| Translators as Adaptive Experts in a Flat World: From Globalization 1.0 to Globalization 4.0?',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0: 970-988.
- Šarčević, Susan (1997) *New approach to legal translation*.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 Šarčević, Susan (2012) 'Challenges to the Legal Translator', in Lawrence Solan and Peter Tiersma (ed.) *The Oxford Handbook of Language and Law*, Oxford; New York: Oxford UP, 187-199.
- Soriano-Barabino, Guadalupe (2016) *Comparative law for legal translators*, Oxford: Peter Lang.
- Tiersma, Peter (1999) *Legal Langu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aró, Enrique Alcaraz, and Brian Hughes (2002) *Legal translation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 Zaretskaya, Anna (2017)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at TransPerfect - the 'Human' Side of the Process', *Tradumática* 15: 116-23.

관련기사

(1) 머니투데이(2019.12.1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1315477495789&type=2&sec=society  
&pDepth2=Stotal](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1315477495789&type=2&sec=society&pDepth2=Stotal)

(2) 동아일보(2019.9.25)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4/97561753/1>

[Abstract]

**A Pilot Study on Chinese-Korean Statute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Education**

Kim, Hae Rhim  
(University of Ulsan)

This paper analyzes Chinese Naver Papago machine translation texts of Korean statutes and post-editings performed by undergraduate and graduate trainee translators in order to suggest what should be considered in statute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educ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machine translation texts showed problems in accuracy, completeness, consistency and lexis, students failed to properly correct these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importance of accuracy, completeness, consistency in legal translation and various legal terminology translation strategies in statute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education.

In addition, problems in machine translation texts were observed in syntax, punctuation, style, and format. Syntax problems were edited properly by graduate trainee translators, but undergraduate trainee translators tended to rely on incomplete monolingual post-editing without comparing source text and machine translation text.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need for source text and machine translation text comparison in statute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education. Punctuation, style, and format problems were not paid attention to by the students. Statute translation aims to provide information and has no legal validity, and its translation can fit into the non-translated convention of the relevant sub-genre of legal langua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at punctuation, style, and format should be modified to fit into the

convention of the non-translated statutes.

▶ Key Words: legal translation, statute,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post-editing education, Chinese-Korean translation

▶ 주제어: 법률번역, 법령,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포스트에디팅 교육, 중한 번역

김혜림

울산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조교수

hrkim1007@ulsan.ac.kr

관심분야: 코퍼스 번역학, 기계번역, 통번역교육, 커뮤니티 통역

논문투고일: 2021년 7월 23일

심사완료일: 2021년 9월 3일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14일